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4. 22 선고 2021가합105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3. 11.

판 결 선 고 2022. 4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204,259,402원 및 그 중 203,887,345원에 대하여는 2001. 6. 26.부터 2011. 6. 2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나머지 372,057원에 대하여는 2001. 6. 26.부터 2011. 9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7046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 판사 허성희, 판사 김서현, 판사 김지예